

조선 학자 이서구(李書九)의 《상서강의(尙書講義)》

사상 분석

—〈주서(周書)〉 제편의 전해를 중심으로

장완영(고웅사범대학 경학연구소)

요약

본 논문은 사상 분석의 각도에서 조선시대 학자 이서구의 《상서강의》를 탐토하여, 이서구가 《상서》 금고문 논쟁, 문무혁명과 군신대의 간의 긴장관계, 주공의 사적과 덕치사상 등 의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이 책은 경연 강장이므로 내용이 일반 주해와 다르며, 정조가 묻고 이서구가 답하는 모식을 채용하여, 내용은 금문·고문을 구분하지 않고 58편에 두루 미친다.

까다로운 금·고문 문제에 대해 이서구는 《상서》를 읽는 자는 우선 이를 논외로 둘 수 있으며, 내용이 유익하고 합리적이기만 하면 설령 고문이라도 읽고 학습할 수 있다고 여겼다. 무왕의 주별과 백이·숙제가 주의 곡식 먹기를 치욕으로 여긴 양난 문제에 대해, 이서구의 해답은 무왕이 백성을 조문하고 죄를 벌하는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공자가 이·제를 찬양한 것은 후세 난신적자에 대한 방미두점(防微杜漸)에서 나온 것이라 했다.

그는 또 주공이 대신 기도하여 무왕을 대신해 죽으려 한 것은 천성의 지정에서 나왔지만, 천정의 명은 사람의 의지로 전이되지 않음을 이성적으로 분석했다고 여겼다. 이 밖에도 경서 내용을 강해하는 기회를 빌어 태조에게 수신안민, 형옥 형량, 음주의 절도 등의 도리를 권면했다.

핵심어: 이서구, 정조, 상서강의, 조선유학

1. 서론

이씨 조선 학자 이서구(1754-1825)는 주로 이씨 조선 영조, 정종, 순종 연간에 생활했으며, 우의정(재상에 해당)까지 관직이 누적되었다. 그는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와 함께 18세기 조선 실학과 문학 대표 시인으로 "사대가"로 칭해지며, 시문집 《강산집》이 전한다.

이서구는 조선 정조 시기 경연관을 담임하여 군주를 위해 경사를 강론하고 계책을 헌납했다. 북학파의 대표 인물로서 이서구의 개혁 의식은 비교적 강하여, 중국을 북학하여 조선의 낙후한 면모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신하가 군주를 위해 경연에서 《상서》를 강하는 이 활동을 통해 정조에게 이용후생의 실학사상과 실사구시의 과학관을 전달했다. 《상서강의》는 이서구와 정조 간의 경연 강습 기록이다.

군신 간의 경연 기록이므로 《상서강의》의 체제는 강장체에 속하며, 전편 약 10만 3천자로, 정조가 묻고 이서구가 답하는 형식으로 조목별로 기록했다. 전체 내용은 〈강령〉 부분을 제외하고 총 401조가 있다. 이 책은 《금문상서》를 숭상하고 위《고문상서》를 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이서구는 정조를 위해 《상서》 58편을 통강했지만, 축자축구 모두 설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조가 해당 편의 자사나 의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이서구가 비로소 해석을 했으며, 논술은 자의, 구독, 문법, 경지, 전장제도 등 다방면을 포괄했다.

현재 학계의 이서구 《상서강의》에 대한 연구는 아직 기보 단계에 속하며, 양주대학 성려의 석사논문 《이씨조선경연문헌〈상서강의〉훈고연구》 한 부만 있는데, 내용은 구주 고찰, 사의 해석, 구의문에 관통, 어법 설명, 구독 분석, 문자 교감, 편제 해석, 수사 설명, 문체 점명 등의 각도에서 《상서강의》의 훈고 내용과 조례를 상세히 논술했다. 본문은 의리사상의 각도에서 《상서강의》 일서를 고찰하여 다른 연구 면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책의 편권이 번중하므로 본편은 먼저 초점을 《고문상서》의 진위, 〈주서〉 중 문무혁명, 군신대의, 주공사적 등 쟁의 문제에 집중하여 이서구가 제출한 사고와 해석을 관찰한다.

2. 《고문상서》 진위 문제에 대한 입장

군경 중에서 《상서》의 진위, 전승, 저자 등 문제가 가장 논쟁을 받는다. 《상서》는 한대에 금문, 고문의 구별이 있다. 이른바 금문은 당시 통행하던 예서로 쓴 사본을 가리키고, 이른바 고문은 선진 육국 문자로 쓴 본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양자의 차별은 단지 서사 자체의 다름만이 아니라 편목의 다과와 경설의 이동도 관련된다.

《금문상서》는 진 박사 복생으로부터 전해졌다. 복생은 진에 금서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전 《상서》를 옥벽 중에 감추었는데, 한초에 꺼낼 때 죽간이 이미 단란되어 겨우 29편만 얻었다. 복생이 소장한 본자는 후에 예정 서사를 거쳐 이 29편으로 고향 제로 일대에서 제자를 교수했으며, 수전 후 구양생, 하후승 및 그 질 하후건 삼명가가 나타났다. 무제 이후 삼가가 병렬로 학관에 세워졌다.

서한 중기 이후 여러 차례 선진 고문으로 쓴 《상서》를 발견했다. 《사기·유림열전》에 이르기를:

공씨에 고문 《상서》가 있어 안국이 금문으로 이를 읽어 이로 인해 그 가를 일으켰다. 《일서》 십여 편을 얻었으니 대개 《상서》가 이에 더욱 많아졌다.

이른바 《일서》는 복생이 전한 것 밖에 일출된 것을 가리킨다. 또 《한서·예문지》에 이르기를:

《고문상서》는 공자 벽 중에서 나왔다. 무제 말 노 공왕이 공자택을 훼손하여 그 궁을 넓히고자 하다가 《고문상서》 및 《예기》, 《논어》, 《효경》 범 수십 편을 얻었는데 모두 고자였다. ... 공안국은 공자의 후예로 그 서를 모두 얻어 29편을 고찰하니 16편이 더 많았고, 안국이 이를 헌납했다. 무고사를 만나... 학관에 열하지 못했다. 유향이 중고문으로 구양, 대소하후 삼가 경문을 교정하니 〈주고〉가 간 하나를 탈하고 〈소고〉가 간 둘을 탈했다. 대개 간이 25자인 것은 탈자도 25자이고, 간이 22자인 것은 탈자도 22자이며, 문자가 다른 것이 700여 개, 탈자가 수십 개였다.

이상 두 조에 기재된 《고문상서》 발견 사건은 또한 《한서·초원왕전》에 부속된 유향의 아들 유희의 〈이양태상박사서〉에도 보이지만, 같은 책 〈경십삼왕전〉에서는 하간현왕이 "얻은 책이 모두 고문 선진 구서로 《주관》, 《상서》, 《예》, 《예기》, 《노자》의 속이며, 모두 경전설기로 칠십자의 무리가 논한 것"이라 했다. 노공왕과 하간현왕의 득서

가 동일 사건의 오전인지? 그 득서 편목이 상동한지? 서궐유간으로 후세가 그 상을 얻지 못한다. 이 16편의 편명은 비록 위《고문상서》와 다수 뇌동하지만 진《고문상서》이다. 이 진《고문상서》는 학관에 세워지지 않았고, 동한 대유 가규, 마융, 정현 등이 《상서》를 주할 때도 금문 부분만 미쳤고 고문은 주하지 않아 당시 중시받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동한 광무제 건무 연간에 〈무성〉 일편이 망실되었고, 진조 영가의 난에 나머지 15편도 전수 망일했다.

한대에 일찍이 위조 《고문상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서·유림전》에 기재하기를: 세상에 전하는 "백량편"은 동래 장패에서 나왔는데, 29편을 분석 합하여 수십으로 만들고, 또 《좌씨전》, 《서서》를 채취하여 수미를 만들어 범 102편이다. 편이 혹 수간이고 문의가 천루하다. 성제 때 그 고문을 구하니 패가 "백량"을 능히 한다고 징소되어 증서로 교정하니 옳지 않았다. 패가 부에게 받았다고 사양했는데, 부에게 제자 위씨 변병이 있었다. 당시 태중대부 평당, 시어사 주창이 상에게 이를 보존하라 권했다. 후에 변병이 모반하여 이에 그 서를 출했다.

이 위조본은 29편을 분할하고 또 타서를 잡찬하여 합하여 백편의 수로 만들고 〈서서〉 두 편을 더하여 총 102편이므로 "백량편"이라 칭했는데, 그중 진품은 한초에 전해진 29편뿐이다. 이 위작 《고문상서》는 당시에 이미 식파되어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다.

동진 때 예장내사 매색도 《고문상서》 58편을 헌납했는데, 《수서·경적지》에 기재하기를:

진세 비부에 보존된 《고문상서》 경문이 있었는데 지금 전하는 자가 없다. 영가의 난에 이르러 구양, 대소하후 《상서》가 모두 망했다. 동진에 이르러 예장내사 매색이 비로소 안국의 《전》을 얻어 이를 주했다. 당시 또 〈순전〉 일편이 꺾였는데, 제 건무 중 오홍 요방홍이 대항두에서 그 서를 얻어 주했으니, 마·정이 주한 것보다 28자가 많아 이에 국학에 열했다.

이 《고문상서》는 진위가 잡유되고 또 위장이 자못 교묘하여, 마·정 소주본 《상서》처럼 금문 34편, 고문 16편을 〈구공〉을 9편으로 나눈 후 24편이 되어 합 58편이며, 한인이 공안국이 일찍이 《상서》를 헌납했다고 기록했고 이 본에 공안국 《전》이 있으므로 당시 그 가의처를 찰각하지 못하고 학관에 열하여 국가 법정 경전이 되었고,

후래 당인이 《오경정의》를 편찬할 때도 이 본을 사용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송대에 이르러 오작, 주희 등이 비로소 그중 일부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발각했고, 명대 매각이 《상서고이》를 저술하여 질의했으며, 청대에 이르러 염약거가 《상서고문소증》을, 혜동이 《고문상서고》를 저술하여 상세히 변박하여 비로소 그중 25편이 위조에서 나왔다고 논정했는데, 이는 《상서》 일문과 고적 중 어를 활집하고 보철한 것이므로 이 《고문상서》는 반진반위이다.

비록 청인의 고증을 거쳐 위《고문상서》의 변증 공안이 대체로 진애낙정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영성한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회의자의 이유는: 첫째, 시간으로 보면 금본 공안국전의 《상서》가 동진 때 비로소 나왔는데 이전 제유가 모두 보지 못했으니 이것이 가의 하나다. 둘째, 전체 《상서》 중 문자가 읽기 쉬운 것이 고문이고 읽기 어려운 것이 모두 금문인데, 복생이 구수할 때 어찌 편벽되게 난독한 것만 기억하고 이독한 것은 모두 잊었겠는가? 셋째, 천년 고서가 늦게 나왔지만 그중 자획이 약간도 탈오가 없고 문세도 저어가 없으니 가의 셋이다. 넷째, 선한 문자는 후중한테 금본 《대서》, 《소서》 문체가 경약하여 단지 후한 위진간 작품 같으니 가의 넷이다. 다섯째, 공안국이 일찍 졸했으므로 무고지화를 조우할 수 없으니 《서서》의 설이 불가신하다.

물론 《고문상서》가 위작이 아니라고 믿는 자도 그 이유가 있다: 공벽서가 학관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전과두 원문이 비부에 간장되어 있었고, 안국이 전한 것이 마침내 벽서라 칭했으므로 벽중고문경이라 했으며, 안국의 전이 동래에서 비로소 행했으니 그 의가 파할 수 있다. 전고훈고는 체제가 각이하다. 우하은주 시대가 체강하는데 고문 중에 〈반경〉, 〈대고〉, 〈다사〉, 〈다방〉이 없지 않고, 금문 중에 〈요전〉, 〈고도모〉, 〈홍범〉, 〈무일〉이 없지 않다. 무릇 28편에 난이가 있으면 58편도 난이가 있으니, 반드시 난자가 금문에 속하고 이자가 고문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복생에게 구수사가 전혀 없었고, 《사기·유림전》에 복벽 소장서가 겨우 29편을 구득했고 나머지는 망실했다 하니, 이 29편에 벽본이 있었다. 기왕 벽본이 있으면 본에 의거하여 교수했을 터인데 어찌 강기해야 했겠는가? 이것으로 그 의를 파할 수 있다.

《고문상서》의 신의난변에 대해 이서구의 회응은:

무릇 일고문《상서》에도 호상이 소수한 것이 있고, 개예가 소전한 것이 있고, 장패가

소조한 것이 있고, 두림이 소득한 것이 있어 교위가 잡출하고 은현무상하니, 비록 마옹, 정현의 통유수학으로도 이미 그 기폐를 면하지 못했다. 다행히 공씨의 서가 후출고행하니 이것이 바로 한유가 이른바 "천백 중에 십일을 보존한" 자이다. 그러나 피차 쟁난저돈의 단, 규분의 설이 경쟁수할 수 없어 도사 경생학자로 하여금 권을 안고 천재 하에서 발탄하게 한다. 선재 명 진제의 언이여: "《서》가 진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 득이 극을 세우기에 족하기 때문이고, 그 위를 오하는 까닭은 그 실이 혼을 수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논하면 고문을 읽는 자는 잠시 안진의 소적을 치하고 단지 그 당리와 부당리만 물을 뿐이다. 무릇 전인의 서론을 철습하고 일기의 시비를 경정하는 것은 신의 몽루한 견해가 감히 역대할 바가 아니다.

그는 정조를 위해 역래 출현한 《고문상서》 판본을 반점했는데, 호상, 개예가 소전한 것이 있고, 또 동래 장패가 위조한 "백량편"이 있으며, 계이하여 또 두림 칠서 일권이 있어 진화 이후 고적 수습이 쉽지 않았으며, 설령 한시 당대 대유인 정현, 마옹, 가규 등도 축일 변석할 수 없어 위서에 기만당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천년 후에 생활하는 사람이 어찌 진절히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는 또 지적하기를, 만약 《서》를 읽으면서 먼저 진위를 변별하는 데 급급하면 분쟁난해하고 문헌이 좌증을 결핍한 상황에서 공포 단지 권을 안고 발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서구는 명인 진제의 견해를 비교적 인동하여 잠시 진위 문제의 논변을 각치하고, 만약 서편 중의 도리가 진실유익하면 위고문이라도 또 어찌 방해되겠는가. 따라서 이 전제 하에 이서구가 정조를 위해 강해한 《상서》 내용도 각의로 《고문상서》의 편장을 요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일률로 통강했다.

3. 문무혁명과 군신대의의 토론

《상서·주서》는 대량의 서주 사사를 기재했는데, 그중 〈태서〉 삼편 및 〈목서〉는 주무왕이 장차 상주를 토벌할 서사사이다. 〈태서〉 삼편의 작, 《서서》에 운: "유십유일년, 무왕벌은. 일월무오, 사도맹진, 작〈태서〉삼편." 일반적으로 주인 관념 및 역사 서사의 영향을 받아 무왕벌주는 조민벌죄로 정의의 사라고 여기지만, 《사기·백이열전》에서 관찰하면 진연하지 않은 듯하다:

백이, 숙제는 고죽군의 이자이다. 부가 숙제를 세우고자 했다. 부가 졸하자 숙제가 백이에게 양보했다. 백이 왈: "부명이다." 마침내 도망갔다. 숙제도 세워지기를 거부하고 도망갔다. 국인이 그 중자를 세웠다. 이에 백이, 숙제가 서백창이 노인을 잘 봉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합왕귀언!" 이르렀을 때 서백이 졸했고, 무왕이 목주를 실어 문왕이라 호하고 동으로 주를 벌했다. 백이, 숙제가 마를 고하여 간왈: "부사불장, 원급간과, 가위효호? 이신시군, 가위인호?" 좌우가 병하려 했다. 태공왈: "차의인야." 부이거지. 무왕이 이미 은란을 평정하니 천하가 주를 종했다. 그러나 백이, 숙제가 이를 치료 여겨 의로써 주속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은거하여 미를 채취하여 먹었다. 아사 차사할 때 가를 지었는데 그 사왈: "등피서산혜, 채기미의. 이포역포혜, 부지기비의. 신농, 우, 하, 홀언몰혜; 아안적귀의? 어차조혜, 명지쇠의!" 마침내 수양산에서 아사했다. 이로 관찰하면 원사비사?

《사기》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백이, 숙제는 무왕이 은상을 공격하는 것을 찬동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문왕이 방졸하여 시골미장인데 대동간과하는 것이 불효라 질의했고, 또 주가 서백으로 은상의 신속인데 별주가 시군의 거로 인덕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후 주가 상을 멸하자 백이, 숙제는 주속을 먹는 것을 치료 여겨 수양산에서 아사했다. 공자는 일찍이 이인을 칭찬하여 "백이, 숙제, 부념구악, 원시용희"라 했다. 또 이, 제가 주속을 먹지 않고 죽은 것이 "구인득인, 우하원호?"라 했다. 그러나 사마천은 이인의 절의에도 선종의 명이 없음을 감탄하며 반문했다: 백이, 숙제가 진정 원이 있는가? 진정 무원인가?

여기에 흥미로운 모순이 존재하는데, 문무혁명은 일반적으로 유가 학자들에 의해 인의의 거로 표거되지만, 무왕별주를 반대한 백이, 숙제에 대해 유가 성인 공자는 또 그들이 "구인득인"이라 했다. 그렇다면 유가의 도덕 표준은 도대체 무왕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백이, 숙제를 지지하는가? 이에 대해 정조는 이서구에게 의문을 제출했는데, <태서>에 운 "유십유삼계"는 무왕별상이 즉위 13년 후임을 표시하는데, 《사기》는 백이가 무왕을 "부사불장, 원급간과"라 지책했다고 기재했으니, 문왕이 어찌 사후 13년이 되도록 여전히 하장하지 않았겠는가? 가견 《사기》의 설이 진가신하지 않다. 이로 유추하면 혹자 《사기》가 백이, 숙제가 "고마" 권간한 사도 가능하게 존재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 이서구는 회응했다:

마천이 백이를 전하니 그 언이 자상모순하여 다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마침내 이, 제 "고마"의 사를 의심하면 공불가하다. 불유정, 주의 설이 여차할 뿐 아니라 "아어수양, 비군불사"가 누차 공맹이 칭한 바이다. "구인득인" 일어에 이르면 직명이, 제의 심사이다. 간벌의 거는 바로 만세 군신의 대방을 존재하기 위함이니 또 어찌 감히 불신하겠는가! 특히 그 언이 전설에서 나와 혹 오차가 없지 않으니 마천이 재택할 여가가 없어 인치 후인의 흑이다.

그는 분석하기를, 백이, 숙제가 수양에서 아사한 사는 송명이학가 정주의 공인을 얻었을 뿐 아니라 시대가 비교적 이른 공자 및 그 문인이 모두 칭도한 바이니 이 사는 응당 확실히 발생했다. 사마천이 《사기》를 찬술한 용의는 본래 백가지언을 정제하기 위함이므로 난면 재료 모순병존, 간택부정의 상황이 있을 터이니 일처에 오가 있다고 해서 《사기》 일서의 기재를 전반 추변할 수는 없다. "무왕벌주" 및 "이, 제고마이간"의 양난 모순을 어떻게 간대할 것인가? 그는 무왕벌상이 확실히 천심에서 나와 조민벌죄한 것으로 의려할 바 없고, 공자가 이, 제의 거를 칭찬하고 《사기》가 특히 고마이간의 사를 저한 것은 단지 후세 군신의 대방을 엄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겼다. 왜냐하면 후세의 군이 반드시 상주의 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유 난신적자가 음모 범상하므로 이는 단지 군군, 신신의 대의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서구는 또 반복하여 정조에게 "무왕벌주"의 정당성을 천명했다. <태서상>에 무왕왕: "이상필여일인"이라 기록했는데, 《예기·곡례》에 운: "천자자칭여일인." 무왕이 이때 상미 천하를 용유했는데 감히 참월하여 천자 전용 자칭을 사용했으니 난도 신속으로서 반반지심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러나 이서구는 "여일인"이 천자 자칭의 사가 아닌 듯하다고 여겼다. 그는 또 문의를 순착하여 해석하기를, 상문이 중과강약의 세를 비론하고 종언 "민지소육, 천필중지"하니, 사실 여기의 "여일인"은 응당 해석해야 한다: 주가 비록 중강하나 리필복망하고, 유아일인이 비록 극묘말하나 구능 극력상조하면 필장 영청사해 등등. 정조가 순문하기를 왜 <태서중> 무왕이 성탕벌하걸 일사를 원인하는가? 이서구는 회응하기를, 무왕벌주는 바로 봉행천벌이니 설령 전무성탕의 사라도 조민벌죄로 불용불행동의 사이다. 그래서 본편 무왕이 먼저 대의를 말하고 비로소 탕사를 거하여 좌증으로 삼아 이 거가 필유소수임을 표시했다. 그러나 <태서>에 또 무왕이 점복하여 벌상이 가행한지 물은 사가 있는데, 만약 의불용사,

위소당위라면 또 하필 점복하겠는가? 이서구는 이것이 성인의 근신에서 나온 것이라 여겼는데, 필경 전쟁은 대사이므로 공천명이 여전히 미종자가 있을까 두려워 임사이 구하여 점복이문한 것이다.

이외에 정조는 또 이서구에게 물었는데, 기왕 무왕별주의 서사사가 이미 <태서> 삼편이 있는데 왜 행군이 목야에 이르러 또 재차 서사해야 하는가? 이서구는 해석하기를, 선유가 일찍이 관찰하기를 탕벌하걸에는 겨우 일편 <탕서>가 있는데 무왕별주 때에 이르러 서사사가 사편이나 많으니 바로 세풍의 변을 증명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또 <태서> 삼편과 <목서>의 차이를 비교하여 지적하기를 <목서>가 상주의 죄상을 수하는데 그 언사기상이 <태서>와 형이하다. 금본 <태서> 삼편은 《고문상서》인데, 《좌전》, 《국어》, 《예기》, 《논어》, 《맹자》 등 서가 인용한 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타편을 철습부연위설한 자 같고, 그러나 주를 수락하는 곳에 이르면 사기박절하고 의미천근하다. 따라서 이서구는 채침 《서집전》의 이 편에 대한 고정에 인동하여 비각능 무왕별주의 부득이지심을 부각한다고 여겼다.

<목서> 무왕별주가 주의 죄상을 수한 경문 내용을 계속하여 정조는 또 제문했다: "색황"과 "감주" 중 어느 것이 조성한 화환이 더 큰가? <미자> 일편을 세관하면 주의 악왈: "침휴어주, 용란패궐덕"이라 하니, 이로 관찰하면 상주의 패가 전문 휴주에서 유래한 듯하다. 그러나 <목서>가 수한 죄상은 주의 패가 전문 색에서 유래한다고 여기는데, 그렇다면 주, 색 양자 중 구경 무엇이 주악의 본인가? 이서구는 정조를 위해 상세히 해석하기를, <미자>와 <목서> 양편을 종합하면 <미자>는 "침휴우주"라 언하고 <목서>는 "유부언시용"이라 위하는데, 매방의 작고, 달기의 피주를 관찰하면 주의 상망은 대개 주에서 원하고 색에서 종한다. 이어서 이서구는 전이하여 주의 사를 빌어 정조에게 권간하여 말했다: 대저 주화, 색황은 왕왕 상인한다. 군주가 일어차가 있으면 모두 망국하기에 족하다. 양자 중 누가 상해가 비교적 큰지는 사실 세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 모두 좋지 않은 일이다. 불과 가국의 흥쇠가 모두 규문에서 시작하므로 공자가 《시경》을 편할 때 《이남》을 그 수에 관하여 정풍으로 삼고 《패》, 《용》, 《위》를 변풍의 수로 삼은 것은 바로 제가, 치국, 평천하 이 진로 때문이다. 역대 침면어색의 화자를 상열하면 예를 들어 주의 부진은 유왕에서 유래하고, 당의 중비는 명황에서 유래했으며, 유해가 독일시의 상란만이 아니라 류독여앙이 왕왕 역수십백년

이미애하다. 따라서 이서구는 결론하기를, 여색의 화환이 열심어주자가 있으므로 고인이 위지 "여제"라 하니, 이것이 우족이위 후세가 의감계자라 했다.

4. 주공 인격과 덕치사상

《상서·주서》는 서주 초년 사사를 기재했는데, 그중 가장 전기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공자가 승경한 주공이다. <금등>은 금문 《상서》에 속하며, 통편 소기과시가 비교적 장구한데, 주요하게 무왕극은 불구 후 환증병장사를 서술하고, 아우 주공이 이에 성심으로 삼왕에게 기구하여 기신으로 무왕을 대체하고자 원의를 표달했다. 그 후 주공이 이 축도지사를 봉함어금등지궐하니 즉 본편 제명 유래이다. <금등>은 또 무왕이 주공 기도 과후 익일내료했지만 불구 선즉봉조했고, 이때 주왕실이 동탕에 빠졌는데 외유 감관은상여민의 삼감이 도모반변하고 내유 관숙 급 군제가 "공장불리어유자(성왕)"의 유언을 산포하여 이에 주공이 거동이년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성왕이 시종 주공에게 의심을 품었고, 최후 상천이 풍뢰지변 시경을 강하하자 성왕이 이에 금등지궐을 개제하여 주공 당초 대사의 도언을 읽고, 이에 오회빙석화해하여 성왕이 주공의 부출과 공헌에 대해 감동을 표달했다.

주공이 원이신대무왕사지사에 대해 정조가 먼저 제출한 의문은 주공의 동기에 관한 것이다. 주공은 국가의 중신일 뿐 아니라 무왕의 아우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주공의 원대사지의원은 구경 효자지도북진청대와 유사한 것에서 나온 것인가? 혹자 주희지론, 채침 《서집전》지설처럼 만약 무왕을 빈사지제에서 만구하지 않으면 중국장경이라 여긴 것인가? 이서구의 회응은 정리 및 형세를 껴고했는데, 그는 말했다:

신지애군, 자지애부는 모두 지성측탄에서 나오니 무기유일호교식재! 시고 비록 평상무사지시라도 군부유질이면 구가이신대지하고 비록 즉일멸사여부악지라도 황당가도고약, 국세위급지추에 그 애통박절지심이 안득불우이어평일호! 유전즉지정지소재야, 유후즉대의지소관야. 지정수무교계하나 대의역당격발한다. 주공지도는 그 심고불능불이야. 주자지론, 채씨지전이 적확금도하다. 이주자소운 비독제위형, 신위군이내위선왕도, 위천하도, 위만세사직생령도자역가견주공지달효순충야.

이서구의 의사에 따르면 무왕 병위지시에 주공이 애형적성지심에서 나와 원의위무

왕사하는 것은 바로 천성지자연에서 나온 것이다. 주희, 채침 등인이 이른바 주공이 주왕실을 위하고 천하생민생령을 위해 도한 자도 병미설착하다. 필경 주공과 무왕은 수족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신관계도 있다. 환언하면 이서구의 회응은 정조 이선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공이 무론 아우로서든 보좌대신으로서든 모두 갈진심력이고 일편성심임을 긍정했다.

정조는 계속 또 물었는데, 천리인육의 각도에서 말하면 주공대사지설은 바로 인성에서 출했는데 이 성이거는 천리에 합한가? 이 문제에 대해 주희는 "성인위지, 역수유차리"라 여겼다. 정조는 질의하기를, 주희지언에 따르면 만약 오늘 범인으로 바꾸면 무시리하고 겨우 성인위지방유리인가? 하물며 세지필부필부가 일념성효로 유족이감신하여 현유응험하는데 하필 성인위지방유차리인가? 이에 대해 양시는 이 거가 천리에 합한다고 여기지 않았는데, 그 왈: "성인고지천리, 위기정절, 고요행어만일." 환언하면 양구산은 주공 이거가 불과 정급 중의 진정유로에서 나온 것으로 본래 천리에 합하지 않지만 인정의 일면을 전현했다고 여겼다. 이외에 정이천이 답인문차사할 때 대왈: "지시요대형사, 기경문명!" 이 의제는 천리에 합하는가의 각도로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정조가 제출한 주희, 양시, 정이 삼종 부동 설법에 대해 이서구는 정급지중에서 주공의 대도가 지성에서 나와 근본 무가고급기타라 여겼다. 천리항재하여 사건 결과로 인해 개변하지 않으니, 가사 당일 무왕 병유 후 주공이 편사해도 지성감천으로 리고불상하다. 그러나 만약 이로써 "천필이차대피, 여세인교역화물책상부부지위"라 여기면 미필연하다. 그는 또 정조를 위해 분석하기를, 무론 성인이든 범인이든 생사기유전정하여 인력이 가전이하는 바가 아니므로, 비록 주공대사지심이 천성에서 출했지만 주공도 심지천의무소개역하되 단지 욱갈오지성, 진오지심하여 이기인천지서혹강감이이했다. 주희, 양시, 정이 삼인지설에 대해 이서구는 부동 각도에서 긍정적평석을 급여했는데, 그 왈: "연즉주자, 구산지론각유주의, 이정자소훈우득주공일단고심, 차사천하만세지위인신자자지소이자진지의의."

〈금등〉은 또 주공이 "거동이년, 죄인사득" 후 일찍이 〈치효〉시를 성왕에게 헌하여 자기의 심적을 표백했지만 성왕이 주공에게 여전히 의심이 있고 또 주공의 권위에 애어 고 "미감초"라 기록했다. 이 시가 즉 금본 《시경·빈풍·치효》이다:

치효치효, 기취아자, 무휼아실. 은사근사, 육자지민사.

체천지미음우, 철평상토, 주무유호. 금여하민, 흑감모여.

여수길거, 여소날다, 여소축조, 여구줄도, 왈여미유실가.

여우초초, 여미초초, 여실교교. 풍우소표요, 여유음효효.

〈시소서〉 운: "〈치효〉, 주공구란야. 성왕미지주공지지, 공내위시이유왕, 명지왈〈치효〉언." 비록 역래 해경자가 시 중의 "치효"가 구경 주공 자비인지 주공이 비유 관, 채 이인인지에 대해 해독이 부동하지만, 주공이 시로 명지한 것에 대해서는 유지일동하다.

정조가 이서구에게 제출한 의문은: "성왕기득죄인, 유유의어주공; 지견〈치효〉시, 시 '미감초', 즉시미패석야. 한소제지어상관결, 연왕지무곽광, 능변지어조, 성왕불급한소여?" 성강지치가 후세에 성세로 시위되므로 안리 성왕은 바로 명군이여야 하는데, 〈치효〉 현시 후 성왕이 유의주공한 것으로 보면 성왕이 한소제의 능명변충간만 못한 듯하다. 이에 대해 이서구의 분석은 그의 관찰 세밀과 숙지사사를 현시했다. 먼저 관계상으로 보면 주공, 관숙, 채숙 삼인이 모두 성왕의 숙부이므로 친정 간에 누가 비교적 가신한지는 성왕에게 난제이므로 그 지난처하여 장신장의한다. 한소제는 충년영혜하고 게다가 연왕, 상관결이 곽광을 무함한 사가 사실과 차거가 심대하여 비교적 변명하기 쉬웠다. 환언하면 이로써 성왕이 한소제만 못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최후 이서구는 정조와 유언의 위기를 분석했는데, 그는 말했다: "관, 채지유언전무의거, 지차위언공동, 천하지최가외, 최난명자내시차등비어야. 성왕조입기설, 고기오야역초비력." 이런 차제발휘의 모식이 바로 경연 강습 중 군신회동지정수전현이다.

무경이 구결 관, 채지란 평정 후 구유은상세력이 주인 중신회통치하자 성왕 급 주공이 편지파무왕 령일 아우 강숙 전왕관리했다. 〈서소서〉 운: "성왕기별관숙, 채숙, 이은여민봉강숙, 작〈강고〉, 〈주고〉, 〈재재〉." 고구설이위삼편내고계강숙지사. 〈강고〉지문을 《대학》이 다인용했는데, 여왈 "극명덕", "작신민", "여보적자", "유명불어상" 등등. 이에 이서구도 이들 사구를 해설하는 것을 빌어 정조에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지리를 전달했다. 예를 들어 〈강고〉 "불감모환과"에 대해 이서구 왈: "강숙초명위제후, 왕치은민, 고차편전취덕업정사상설. 이위치막대어애민. 환과고독, 민생지죄가애자." 또 〈강고〉 "요수, 복념오육일, 지우순시"에 대해 이서구 왈: "용형최의근신. 이의유소대,

죄유경중, 복념지구속역당수시부동. 차기복념지도, 비육도비사랑, 우유과단. 원기정적, 참이사증, 요사'흙흙'지의상존뇌중, 필구기생도, 무감어오심이이. 구혹정적유유미로, 사증유유미비, 수지월월유시역하소방!" <주고> 중의 "덕장무취", "음식취포"에 대해 이서구는 해석 말했다: "'덕장무취', 계기침면지해야; '음식취포', 도기환유지정야, 소언각이. 이음불지란, 취유온극, 군자소면, 기필혼미전광여유령, 완적지도, 연후방가위지취호! 재계즉장이교신, 시질즉방절색우, 이레이정, 고불감중주. 지어연락지제, 소이합빈주, 통정지, 부당여재계, 시질지시일개론지. 가음즉음, 불가음즉불음, 수시득의, 시위중도." 상술 몇 칙 예자는 모두 이서구가 경서 중 원문의 해석을 빌어 정조에게 치국안민, 양형옥지준칙, 대대음주지정확태도 등 사상을 천술권간한 것이다.

5. 결론

조선 정조, 경연강관 이서구의 문답 필기를 기록한 《상서강의》 일서는 전통 유사경생의 《상서》 주해 작품과 구별된다. 전서는 정조문, 이서구답의 모식을 채용하여 《상서》 58편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토론했다. 본문은 사상의 각도에서 절입하여 이서구의 《상서》 금, 고문 문제 및 《상서·주서》 중 부분 편장 견해를 탐토했다.

첫째, 역래 쟁론불휴의 금, 고문 문제에 대해 이서구는 비교적 조합 입장에 서서 위《고문상서》를 간대했는데, 그는 설령 위《고문상서》라도 당중에 천리교화와 치국안민지사상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편불수요경역폐기불독한다고 여겼다. 그는 또 《상서》를 읽기 전에 진위 문제에 집착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둘째, 그는 문, 무혁명이 비록 신하가 국군을 추변하는 행위에서 출했지만 그것은 상주폭학무도로 인해 무왕이 조민범죄하여 부득불여차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성인도 후세 난신적자가 차기모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했으므로 공자가 특별히 백이, 숙제가 치식주속이사 사적을 표거하여 모범과 제성으로 삼았다.

셋째, 그는 주공이 원의대무왕이사하는 것이 바로 지정과 성심에서 출했지만 천명유정하여 왕왕 사람의 의지에 따라 개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그는 <강고>, <주고> 등 편 내용을 빌어 정조에게 수양치민의 도리를 천술하고, 정조에게 형벌 면전

에서 심정이근신해야 하며, 주가 전연지악이 아니라 음주가 득당 혹 부득당의 나날에 있다고 제성했다. 전서를 종관하면 경연강장이 군신호동의 독특한 모식임을 체현했다.